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4월 3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4월 3일

3. 제안이유

자녀장학금 최대지급대상 정원을 25명으로 한정하여 대원 다·소에 따른 소방서·군별 형평이 맞지않고 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별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으로 함.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함.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실과 불합리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하고
- 장학생의 정원을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 매년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과 지역화합의 안정차원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정원, 지급액등의 현실화가 필요한 바,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